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9호
2021. 1. 29.(금)

차 례

규 칙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09호) ·· 1

고 시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9호) ····· 7

공 고 (3)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공고 제2021-102호) ····· 8
- 2021년도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1-104호) ···10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고지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106호) ·17

입법예고 (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13호)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14호)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15호) ·6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16호) ·7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117호) ··81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1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0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2조의4제3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의 형편에 따라 그 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로 한다. 다만, 숙직 및 일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인 숙(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당직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생략)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이 있는 곳을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재 인원의 1/3 이상 비상근무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영 제2조의4제3항 각 호의 ------. <삭 제>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	<삭 제>

재 인원의 1/ 5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재 인원의 1/10 이상 비상근무	<삭 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당직근무자의 실질적 휴무를 보장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미비한 일부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일 숙직근무자의 휴무 가능일 변경 및 일·숙직자의 휴무 사용 기한을 확대함(제5조).

❍ 비상근무의 종류 및 요령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제21조 및 제2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495-7	대전로1033번길 60	2021. 1. 29.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8-4	덕암북로58번길 18	2021. 1. 29.	건물신축	덕암북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02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 ·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일반명단	라벨용명단	전산자료 복사본
일반용지(A4) 1매 60원	라벨용지(A4) 1매 240원	(800원×CD개수)+(25원×면수)

작성비용 산출근거

○ 일반명단 : A4용지 1매당 60원

항 목	금액(원)	산 출 기 초
계	60.76	A4용지 1매당 작성 비용 / 원 단위 이하 절사
용 지 대	9.06	▪ 복사용지(A4 1Box당 22,000원) －22,000원 ÷ 2,500매(파지율 3%) = 9.06원
소모품비	26.7	▪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일체형(사용매수 7,000매 / A4기준) －187,000원 ÷ 7,000매 = 26.7
기타경비	25	▪ 전기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기타소요비용 －A4용지 1매 작성 시

○ 라벨용명단 : A4용지 1매당 240원

항 목	금액(원)	산 출 기 초
계	240	A4라벨용지 1매당 작성 비용 / 원 단위 이하 절사
용 지 대	190	▪ 라벨용지(A4 1Box당 22,000원) －18,500원 ÷ 100매(파지율 3%) = 190원
소모품비	26.7	▪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일체형(사용매수 7,000매 / A4기준) －187,000원 ÷ 7,000매 = 26.7
기타경비	25	▪ 전기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기타소요비용 －A4용지 1매 작성 시

○ 전산자료 복사본 : (800원 × CD개수) + {25원 × 면수 (A4용지 1면당 21칸)}

항 목	금액(원)	산 출 기 초
C D	800	▪ CD : 1개당 800원
기타경비	25	▪ 전기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기타소요비용 －A4용지 1매 작성 시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021-104호

2021년도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접수기간 : 2021. 2. 22. ~ 3. 3.(10일간)

2. 접수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취합 후 일괄 구에 제출됨)

3. 신청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 최근 5년 내 교부금을 기 지원받은 대상사업 신청 시 지원 심의 제외
(단, 안전상 보수시급성을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예산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4. 지원대상 사업

○ 단지내 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 보수

○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행위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 자전거 보관대·CCTV 설치 및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 보수

○ 공동체 활성화 시설 설치·보수

○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공동시설 한함)

○ 옹벽·담장·축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유지 보수

○ 재난·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5.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천만원 이하 지원**

지원 기준	· 의무관리단지 60% 이내 · 의무관리단지 이외 단지중 80세대 이상 단지 70% 이내 · 80세대 미만 단지 80% 이내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표회의 또는 관리기구(관리소장)가 미구성된 단지는 단지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를 거쳐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시 회의록(회의참석자 서명)사본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해당 단지 한정)**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견적으로 제출 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1부 및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 서류(용역 관리 포함)**

※ 2017년 경비원 고용현황, 2020년 경비원 고용현황 증빙자료 제출

○ **2020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포상 증빙자료(해당단지에 한함)**

○ **경비원 및 청소원 휴식공간 마련,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증빙자료(해당단지에 한함)**

7.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시급성・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및 지원액 결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은 동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

8.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9. 지원절차

사업 및 신청결정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서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건축과)] (2021.2.22. ~ 3.3.) ⇨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결정 · 통보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준공 및 정산보고

10.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현황사진 포함 3매 이내로 1부 제출(추후 구청 요구 시 추가제출)

○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반드시 5월 이내 공사 착공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

○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 042-608-41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1>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	사 업 개 요			총사업비(단위:천원)		
	사업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연락처 ○○○-○○○○-○○○○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단지 한정) 3.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4. 청렴이행서약서 및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서류(2017년, 2020년 자료 제출)

<서식2>

사업 계획서

□ 단 지 명 :

□ 사업 개요

○ 공 사 명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간략)

-

-

-

□ ○○○○(대상 공동시설) 전체 현황

○

-

-

○

-

-

□ 사업 내용

○

○

□ 추진 기간 :

☐ 그동안 ○○○○(대상 공동시설) 보수 내역

○

○

○

※ 년도 순으로 작성 요망

☐ 현황(시설) 사진

※ 전경사진 1매, 시설물 별 1매 이상 사진 첨부

사이즈 4×6(10.2㎝×15.2㎝) 이상

<서식3>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06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고지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고지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22조
3. 공고기간 : 2021. 1. 29. ~ 2021. 2. 12. (15일간)
4. 대상 및 내용

구분	성명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총 계	과태료	가산금	
1	임○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438, 2층 (읍내동), 바인텍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22만 7천6백원	20만원	2만 7천6백원	수취인불명
2	송○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64, 3층 (오정동), 주식회사태광산업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22만 7천6백원	20만원	2만 7천6백원	폐문부재

5.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과 공중위생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042-608-6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1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

27조, 제28조, 제29조).

나. 소송비용 및 판결금 지급과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

다. 구상권 행사에 관한 소속주관부서 장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

라. 행정안전부 인감사무정비계획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마.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수임료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신청 시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바. 법무부 등 다른 기관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사. 신청사건과 소송물가액 3천만원 미만, 3억원 이상의 수임료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2) 전 화 : 042-608-6061

3) F A X : 042-608-3811

4) E-mail : popoum@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참가인, 이해관계인”을 “참가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구”라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행정기관”을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으로, ““구청장 등””을 ““구 등””으로,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민사소송”을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가 된 민사 및 형사 소송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무관련사건과”를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직무관련사건”을 “직무관련사건(이하 “행정소송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서”를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중 소송수행자 지정이 불가능한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을 “소송대리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소송수행자 등”란”을 “소송수행자 등”이란”으로 한다.

제13조 중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는”을 “구 등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독촉, 재산조사, 강제집행, 그 밖에 소송비용 추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 및 소송비용 추심의 사무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에서 소 취하에 동의를 한 경우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추심할 금액이 그 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이 다수인 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이 개인

별 소송비용 부담액보다 큰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송주관부서에 이에 관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기획홍보실의 관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를 “결정이 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으로, “사전에”를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로, “조치를 취하여야”를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을”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그 원인행위”를 “불구하고 그 원인행위”로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을 “확정되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판결 확정 시까지의 이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금 반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홍보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지급을 하거나 패소판결 등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공적증명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공적증명서 포함)

4. 위임장(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함)(별지 제10호서식)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을 참작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사전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을 “사전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 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사자는”을 “해당 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를 “직무관련사건의”로, “절차,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를 “절차는 제2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검찰수사”를 “수사”로, “때까지로 한다”를 “때까지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정과 관련하여 구청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를 “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피해자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사건”을 “형사 고소·고발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변호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피해자 의견서 제출 등의 형사사건 진행에 관한 사항

제24조의 제목 “(수임료 등 비용지급)”을 “(사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지급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홍보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

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자의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을 취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획홍보실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2.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제27조의 제목 “(제3자적인 피소사건)”을 “(변론 참석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을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담당자는”을 “송무취급 공무원은”으로,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을 “확인하고, 청구취지 및 이유의 추가·변경 등으로 대응의 필요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소속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결정서 사본”을 “결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홍보실장이”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고

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사건의 피소(상고)보고(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사건의 결과보고(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

3.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가. 제기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나. 제소일 및 사건번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임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별표 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구분 / 소송별	내 용 (소송물가액)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사 례 금	공 통 경 비
민사 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원 300,000원	1. 승소비율이 60%이상 인 때에는 그 비율을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신청 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 감정비 : 실비 4. 기타 비용 : 실비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1) 3천만원 미만 2)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 5억원 이상	 1,000,000원 1,200,000원 2,000,000원 2,500,000원 3,000,000원 3,500,000원		
	3. 상고심	본안사건의 1/2이내		
행정 소송 ·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 각심 본안사건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2,000,000원 4,000,000원 6,000,000원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별지 제5호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귀 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1. 사 건:
2. 원 고:
3. 피 고:
4.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 보고
   마.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소 송 수 행 자(대 리 인) 해 임 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소송 수행자(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한 「 」를 해임함.

1. 사건명:

2. 당사자: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원(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소송사건 접수(결과) 보고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대덕구청장 (인)

제 목: **소송사무보고**

다음 (국가·행정)소송사건의 접수(결과)를 보고합니다.

<table>
<tr><td>원 고</td><td colspan="2"></td><td>피 고</td><td></td></tr>
<tr><td>사 건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사건번호</td><td colspan="2">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td><td colspan="2">법원 및 사건번호</td></tr>
<tr><td colspan="2">제 호</td><td colspan="2">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td></tr>
<tr><td>담당 검사·
공익법무관</td><td colspan="2"></td><td>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td><td></td></tr>
<tr><td>접수일자</td><td>. . .</td><td>응소
제소</td><td>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td><td></td></tr>
<tr><td>사건개요</td><td colspan="4"></td></tr>
<tr><td>소송진행
상 황</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선고일자 및
소송결과</td><td colspan="2" rowspan="2"></td><td>판결문송달일자</td><td></td></tr>
<tr><td>결 과 조 치
(상소·확정)</td><td></td></tr>
<tr><td>첨 부</td><td colspan="4">□ 소 장 □ 소송수행자지정서 □ 기 타( )</td></tr>
</table>

[별지 제8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대덕구청장 (인)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

사건번호	법 원		사 건 명	
	법무부			
원 고			피 고	
공익법무관			사건구분	공동 · 지휘
소송수행자			전화 · FAX	
변 론 기 일			다음기일	□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	증명방법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 견		
첨 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별지 제9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 청구인 등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원고 ,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간의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또는 가집행조건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 당사자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 구 금 액		
원고명	인용액	인용액	원 금	이 자	합 계
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각서 1부(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3.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각 서

원고 피고 대덕구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인)
주소
원고 성명 (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인)
주소

[별지 제12호서식]

패 소 원 인 분 석 표

<table>
<tr><td>사 건 번 호</td><td colspan="2"></td><td>사 건 명</td><td colspan="2"></td></tr>
<tr><td>원 고</td><td colspan="2"></td><td>피 고</td><td colspan="2"></td></tr>
<tr><td>패 소 원 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8">패 소 원 인
구 분</td><td colspan="3">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td><td></td></tr>
<tr><td colspan="3">증거멸실</td><td></td></tr>
<tr><td colspan="3">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td><td></td></tr>
<tr><td rowspan="4">소 송
수 행
잘 못</td><td colspan="2">사실적 · 법률적 검토부족</td><td></td></tr>
<tr><td colspan="2">주장 잘못</td><td></td></tr>
<tr><td colspan="2">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td><td></td></tr>
<tr><td colspan="2">상대방 주장 ·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td><td></td></tr>
<tr><td>기타</td><td colspan="3"></td></tr>
<tr><td>제 안 사 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 패소원인 구분은 해당란에 “○” 표시</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 참가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소송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민사소송을 말한다.	1. ----------(이하 “구”라 한다) ----------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구 등”----------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

	청사건---.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2. ---------- --- 공무원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가 된 민사 및 형사 소송사건----------.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 --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와 ---------.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 직무관련사건(이하 “행정소송사건”이라 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5. ---------- --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중 소송수행자 지정이 불가능한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 소송대리인을 ---------- ----------.

7. “소송수행자 등”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이란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3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는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반소) 구 등이 ----------.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독촉, 재산조사, 강제집행, 그 밖에 소송비용 추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	

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 및 소송비용 추심의 사무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에서 소 취하에 동의를 한 경우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추심할 금액이 그 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이 다수인 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 부담액보다 큰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7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송주관부서에 이에 관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기획홍보실의 관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한다.
③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 제공자”라 한다)에게	제18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기획홍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기획홍보실장은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삭 제>
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결정이 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 -------- ---------- 있는 ---------- ----------.
<신 설>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그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③ ---------- 불구하고 그 원인행위 ---------- ----------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
제19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기획홍보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할 수 있다.	제19조(임의변제) ① ----------확정되었을----------.
② 제1항 중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선고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판결 확정 시까지의 이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금 반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홍보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③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판결확정증명원)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지급을 하거나 패소판결 등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공적증명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공적증명서 포함) 4. 위임장(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함)(별지 제10호서식)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20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	제20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을 참작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준용한다.
③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홍보실장과 사전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21조(수행절차 등) ① ---------- 사전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 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 ---------- 해당 공무원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 절차는 제2장----------.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삭 제>
제22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22조(지원범위) ① ---------- 수사---------- 때까지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정과 관련하여 구청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② 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피해자가 ----------.
<신 설>	③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 고소·고발사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 변호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피해자 의견서 제출 등의 형사사건 진행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24조(수임료 등 비용지급) ①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사후지원) <삭 제>

<신 설>	②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홍보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 1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 지원할 -----.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방침을 받아 기획홍보실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

	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자의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을 취하한 경우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2. 해당 공무원이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획홍보실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

	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2.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제27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변론 참석을 요하지 않는 사건) ①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 ② ---------- 송무취급 공무원은 ---------- 확인하고, 청구 취지 및 이유의 추가·변경 등으로 대응의 필요성-----------.
제28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경우	제28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	2. ----------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취급 공무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판결서·결정서 사본	6. ------- 결정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기획홍보실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이 소송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홍보실장이 ----------

다. ③ (생 략)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고 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사건의 피소(상고)보고(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사건의 결과보고(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

	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 3.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가. 제기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나. 제소일 및 사건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1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시세인 균등분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명칭 및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1)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변경함에 따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함.

2) 사업소분의 세율이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지고, 시세이던 “개인사업자, 법인균등”이 자치구세이던 재산분과 통합, 자치구세인 사업소분으로 이관됨.

3)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및 구 세수변동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대전광역시 시세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던 “기본세율”부분을 종전대로 적용하는 세율조항을 신설 및 정비함.

4) 법 제84조에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

나. 법84조의7에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24,

이메일 : pk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담당자 박근옥(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신 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생 략)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 1. 1.>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1. 삭제 <2013. 1. 1.>
2. 삭제 <2013. 1. 1.>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1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정비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24, 이메일 : pk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담당자 박근옥(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산분의”를 “사업소분의”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의 보통징수)”를 “(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의”를 “사업소분의”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중 “주민세(재산분)”를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2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3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4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	
5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6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7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8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9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10	건축물 조사표	
11	주택 조사표	
12	선박 조사표	
13	항공기 조사표	
14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15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16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17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 ---------- 사업소분의 ---------- ----------(사업소분) ---------- ----------. ② ---------- 사업소분 ---------- ----------.
제9조(주민세 재산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 사업소분의 ----------(사업소분) ---------- 법 제83조제6항----------.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

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1. 삭제 <2013. 1. 1.>
2. 삭제 <2013. 1. 1.>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1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신설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애니메이션업 신고 및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함(안 별표).

- 애니메이션업 신고 : 1건 20,000원

-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 1건 10,000원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 1건 4,000원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24, 이메일 : pk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담당자 박근옥(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의 6) 음악산업란 다음에 7) 애니메이션 산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애니메이션 산업			
• 애니메이션업 신고 수수료	1건	20,000	
•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	10,000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1건	4,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애니메이션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애니메이션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1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기존의 개인 중심의 체력단련실과 건강프로그램 **유료 이용 체제**에서 자율적 소모임 중심의 **무료 이용 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는 주민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체력단련실 운영 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삭제함. (안 제6조제8호 및 별표 수수료액 표 중 건강생활지원센터이용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대덕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보건소(전화 : 042-608-4472, FAX:042-608-3853, E-Mail : leegh9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자 이가희(전화 : 042-608-44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중 건강생활지원센터이용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삭 제>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

□ 개념 및 사업 운영원리

○ 개념

-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

○ 사업 운영원리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의 핵심 운영원리는 ① 지역사회 기반, ② 주민참여, ③ 지역자원 협력이며, 이에 따른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

□ 설립 목표

○ 특화된 보건기관으로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반	주민 참여	지역자원 협력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건강활동 참여주민의 발굴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망 구축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	참여주민 역량강화, 건강지도자 양성	담당 인력 및 협력자원 인력 역량 강화
지역건강 활동계획 수립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 조직화	지역특성 기반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주민 주도적 건강 활동 수행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필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00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